

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 회의록

□ 기관명 : 경남동부지사

심사일시	2023. 9. 22. (금) (13회차)	심사방법	대면심사	
심사안전	▶ 인정심사대상 : 59개소 (인정 56개소, 취소 3개소) ▶ 불인정 등 : 0개소			
■ 심사내용 및 결과 ○ 위험성평가 인정 결정 - 인정 결정 : 심사 대상 59개소 중 00000000 등 56개소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기준에 의거 인정 결정함. (종합점수 70점 이상) ※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: 00000000 등 16개소는 2024년부터 산재보험료 20% 감면될 예정 ※ 인정사업장 중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 50인이상(9개소), 건설업, 운수·창고·통신업, 전기업, 기타의 사업(오락, 문화, 건물관리업) 등 31개소는 요율제 적용 제외됨. ※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*은 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종류 중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적용 * 근거 :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규정 제3조(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) ○ 위험성평가 인정 취소 결정 - 취소 결정 : 00000 등 3개소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인정 취소 결정함. ※ 00000(중대재해 발생사업장), 00000 및 00000(사후심사 인정 기준 미충족) * 근거 :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2조 2항(중대재해) 및 5항(사후심사)				
■ 심사결과 공개여부	☐ 공개			
	☒ 부분공개 (사유 및 공개 내용 : 사업장 정보 등 비공개 정보 삭제 후 최종 심사 결과만 공개)			
	☐ 비공개 (사유 :)			
■ 심사위원 서명				
성 명	서 명	찬반(○,×)	심사 제외 대상	제외 사유
윤기한				
배광호				
이상영				
강경남				
유병철				

※ 심사 제외 대상은 심사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컨설팅·현장심사를 직접 수행한 사업장을 말함
 ※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결과서 등 관련서류는 별도 첨부